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직근로자 채용 재공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직 근로자(연구실안전전문인력)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2월 3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 1. 채용 개요

#### □ 채용분야 및 인원

연번	채용 분야	선발 예정인원	계약기간	근무부서 (근무지)
1	연구실안전 전문인력	1	계약체결일 ~ 정년(만60세) (공무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 (충청남도 부여군)

※ 단, 3개월 실무수습 기간 후 심사를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 여부 결정

#### □ 담당업무

주요업무
○ 연구실안전관리(위험물안전관리 등) 업무 ○ 방사선안전관리(방사선작업종사자 관리, 방사선장비 운영 및 관리 등) 업무 ※ 구체적인 세부업무는 업무분장에 따름

###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 응시자격

##### 가. 공통 자격

- 응시연령: 공고일 기준 인사관리 규정상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단,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정년)에 따름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제12조(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결격사유**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요건**

- 응시자격 : 위험물산업기사의 자격이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① 기술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사람
    - 기술사 :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전기안전, 화공안전
  - ② 기능장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 기능장 : 가스

③ 기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 기사 :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④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⑤ 산업기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취득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산업기사 :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 다. 우대사항

○ 우대사항 : **관련분야 자격증 및 근무경력**

① 관련분야 자격증

- 방사성동위원소 취급 일반면허 이상 자격증

- 응시자격 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이외 자격증(‘응시자격’ 기준 동일 적용)

\* 응시자격 요건 중 위험물산업기사와 각 목에서 정한 자격증 중 하나

② 관련분야 근무경력

- 관련분야 : 연구실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방사선안전관리

• ‘경력’은 관련분야의 담당업무 실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행기관의 관인·담당자 성명·연락처 기재 필수)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5. 3. 12.예정)**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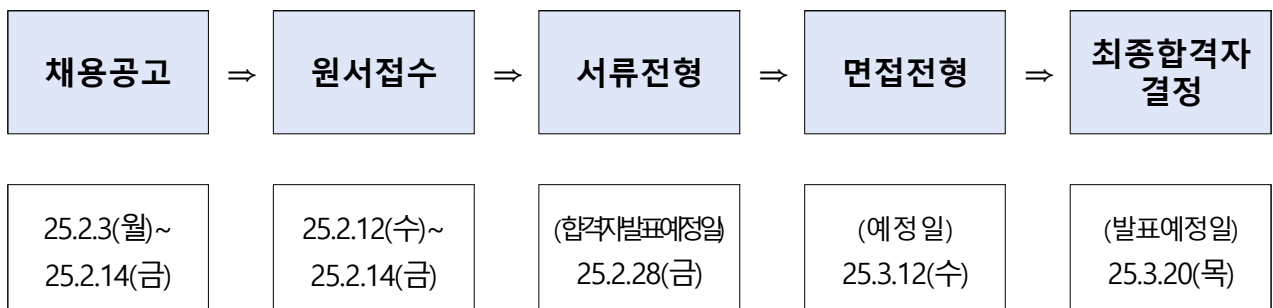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나.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만 인정하며, 근무연차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

※ 자격증은 등급 및 개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급수가 다른 동종 자격증은 1개만 인정)

※ 반드시 증빙자료(관련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등) 제출 시에만 인정

※ 우대사항은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점수의 상한선을 넘지 못함

### 3. 채용 절차



□ 서류전형(1차 시험)

< 서류전형 심사 기준 >

평정요소		배 점	심사 기준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자기소개서	40점	○ 자기소개서 : 40점 *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학력, 출신지, 성명 등) 기재 시 감점
담당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관련분야 자격증 등	40점	○ 응시자격 요건 충족여부(자격증 등) : 20점 ○ (우대사항 점수)방사성동위원소 취급 면허 : 10점 ○ (우대사항 점수)응시자격 요건 제출 외 자격증 : 10점
	관련분야 경력	20점	○ (우대사항 점수)관련분야 근무경력 : 20점
계		100점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일 때는 응시자의 자격사항 등 서류전형 심사 기준에 따라 우대사항 점수를 제외한 심사 기준\*의 평가점수가 **만점의 50퍼센트 이상을 적격, 50퍼센트 미만을 부적격**으로 판단하여 적격자 합격 처리

\* 자기소개서, 응시자격 요건 충족 여부(자격증 등)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때는 서류전형 심사 기준에 따라 우대사항 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가 만점의 5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서류전형 평가점수에 우대사항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합격자 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전원 합격 처리

□ 면접전형(2차 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5개 평정요소를 상(우수: 10점), 중(보통: 6점), 하(미흡: 2점)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	
① 공공기관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업무관련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면접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시험 당일 불참 또는 지각 시 면접대상에서 제외됨

##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 분야	최종합격자	예비합격자 (운영기한)	비고
연구실안전전문인력	1명	2명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예비합격자 2배수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 4. 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 공고 기간	2025. 2. 3.(월) ~ 2025. 2. 14.(금)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응시원서 접수	2025. 2. 12.(수) ~ 2025. 2. 14.(금)	① 방문 접수(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에는 접수하지 않음 ② 등기우편 접수(접수마감일 빠른등기 소인분까지 접수) * 우편접수 겹봉에 “연구실안전전문인력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③ 전자우편 접수(접수마감일 18:00까지 메일 도착분에 한함) * 전자우편 주소: mani0705@korea.kr * 메일제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직 접수-응시자 성명”
서류전형 심사	2025. 2. 20.(목) ~ 2025. 2. 26.(수)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2025. 2. 28.(금)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예정일	2025. 3. 12.(수)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시 공고 ※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진위여부확인	2025. 3. 12.(수) ~ 2025. 3. 19.(수)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2025. 3. 20.(목)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공고
채용 예정자 관련 서류 접수	2025. 3. 20.(목) ~ 2025. 3. 25.(화)	
채용 예정일	2025. 4. 1.(화)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된 일정은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 예정

##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원서 접수 기간 : '25. 2. 12.(수) 09:00~ '25. 2. 14.(금) 18:00

○ 응시원서 교부 : 공고문 내 기재된 응시원서를 내려받아 작성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내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으로 접수

\* 중식시간(12:00 ~ 13:00)에는 접수하지 않음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에는 겹봉에 “연구실안전전문인력 응시원서 재중” 표기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해 접수하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접수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우)3311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 채용담당자

※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우편으로 접수 시 참고

• 전자우편 접수: mani0705@korea.kr

• 메일 제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직 접수-○○○(응시자 성명)”

※ 전자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 응시원서, 응시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응시자격 요건 자격.경력(해당자) 등 증빙서류 등 ※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면접전형 전일	제출대상	제출서류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1부
	우대사항 대상자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 현재 직장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최종합격자 발표 후	○ 공정채용 확인서, 국가건강검진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 ※ 구체적인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6. 근무조건 등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정년(공무직\*/만60세)

\*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심사를 거쳐 공무직 전환 여부 결정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수습제도)를 따름

○ 근로 시간 및 보수

채용분야	근무시간	보수(1호봉 기준)		
		계	기본급	식대
연구실안전전문인력	9:00~18:00(주5일, 주40시간)	2,833,920원	2,693,920원	140,000원

- 경력(호봉)인정 : 군경력과 국가유산청(소속기관 포함) 근로자 근무 경력만 인정

\* 상기 경력 외 공무원 근무경력 등 불인정

※ 상기 보수는 1호봉 기준으로, 군경력과 국가유산청(소속기관 포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2024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임금채정기준”에 따름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명절휴가비(연 2회, 설·추석 각 550,000원) 지급

## 7. 유의사항

###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 서류 원본에 한하여 반환(반환신청기간 : 2025. 3. 20. ~ 2025. 4. 15.)  
단, 사본은 채용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
- ※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공정채용기준 제26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시험위원회에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시험위원회에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채용담당자(041-830-7174)에게 문의

- 붙임 1.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 1부.
2. 응시원서 1부.
3. 응시지원서 1부.
4. 자기소개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8.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 끝.

[붙임 1]

##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

성 명	응시 분야	비고
	연구실안전전문인력	

### ▣ 작성목록(총괄표)

- ※ 아래 목록 번호순으로 집계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미사용)
- ※ 내용을 작성·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 ×” 표시
- ※ 증빙 서류 미제출 시 자격증 등 미인정

목 록	작성 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필수) * 붙임1	
2. 응시원서(필수) * 붙임2	
3. 응시지원서(필수) * 붙임3	
4. 자기소개서(필수) * 붙임4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 붙임5	
6. 응시자격 요건, 자격·경력(해당자) 등 증빙서류(필수)	
7. 우대사항, 자격·경력(해당자) 증빙서류	
8.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필수) * 붙임6	
9.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완료 후 반환 필요 시) * 붙임7	
10.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 붙임8	

## 응 시 원 서

본인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공무직근로자(연구실안전전문인력)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시험합격을 무효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귀하

<b>※ 접수 번호</b>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 (연구실안전전문인력)	사진부착 불요함
성 명	한글		생년월일	. . .	
	한자			<small>(시험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small>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 응시원서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b>응 시 표</b>					사진부착 불요함
< 공무직근로자(연구실안전전문인력) 채용시험 >					
성 명	한글		생년월일	. . .	
	한자			<small>(시험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small>	
<b>※ 응시 번호</b>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 (연구실안전전문인력)	
2025년 월 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인)					

## 응시원서 작성요령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 또는 워드(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1. 응시분야 : 채용예정 분야를 정확하게 기재
2. 성 명 : 한자(漢字)는 정자로 기재
3. 생년월일 :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4. 주 소 :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우편번호도 함께 기재
5. 연 락 처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일반전화는 지역번호도 기재

「※」표시란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자 기 소 개 서

◎ 자기소개서 (지원직종 직무기술·직무능력 포함 작성)

(유의사항) 응시지원서 또는 자기소개서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 가족관계 (학력, 지위, 재산) 등의 사항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 분량은 최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글씨크기 12, 줄간격 150mm, 용지 좌우 상하 여백은 각각 25mm, 머리말, 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근로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근로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1) 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자격증·경력·학위) 확인기관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우대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근로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귀하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p>1. <b>공직자</b>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2. '<b>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b>'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3-1. 해당 부패행위로 <b>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b>된 사실이 있는지</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b>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b>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4-1. 해당 부패행위로 <b>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b>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b>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b></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p>	해당 <input type="checkbox"/>
<p>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p>	해당 <input type="checkbox"/>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붙임 7]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경우 기재)	다른 << 채용진행 완료 후 필요한 자에 한해서 제출>>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5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귀하

###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 명	생년월일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⑫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성명 :**

**(서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귀하**